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00마력으로 상향 서울인쇄조합, 청와대·환경부·법제처 등 적극 건의

인쇄업계의 현안이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기존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청와대, 환경부, 법제처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안인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변경 요청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지난 10월 25일 완료되고 11월 4일 환경부령으로 공포,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구청과 대치를 하고 있는 필동 지역 23개 업체와 관련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의 족쇄는 풀릴 수 있게 됐다.

'소음·진동관리법'은 도심형 산업인 인쇄산업의 적잖은 장애 요소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며, 산업화가 시작됐던 시기의 기준으로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 법규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기존에는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는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쇄기계가 발달하고 인쇄방법 및 부착기계 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마력수는 상향되더라도 소음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다. 이에 기계의 발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법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1990년대 대비 동력의 규모는 2배 증가했으나

소음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오프셋인쇄기계는 소음배출시설 기준을 100마력 이상으로 규제완화하되, 오프셋 외 인쇄기계는 동력규모 및 소음발생량 변화가 거의 없어 소음배출시설 기준을 50마력 이상 현행기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인쇄조합이 제출한 법령안은 지난 4월 26일 접수됐으며, 지난 5월 20일 한 차례 심사가 반려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인쇄조합은 청와대, 안정행정부, 환경부 등 각 부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새누리당 산하 손톱가시뿔기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해 100마력 개정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그리고 지난 8월 6일 법제처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법령안을 접수, 10월 25일 심사완료됐으며, 11월 4일 오프셋인쇄기를 포함할 경우 100마력으로 상향토록 개정됐다.

앞으로 서울인쇄조합은 환경부에 제출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서'를 중심으로 중구청과 함께 관련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노력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법 개정 건의 (2012. 1. 27)
- 새누리당 법 개정 건의 (2012. 2. 9)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건의 (2012. 2. 23)
- 제16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건의 (2012. 2. 29)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건의 (2012. 4. 23)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실태조사 (2012. 9. ~10. 9개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 예고 환경부 2013-0069, 2013-2-21)
- 소음·진동관리법 유보에 대한 환경부 항의 방문 (2013. 5. 6)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관련 행정처분 취소 요청 (2013. 5. 6/중구청 환경과)
-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안) 시행 촉구 서한 발송 (2013. 5. 9/환경부 및 중구청)
- 필동지역 인쇄업체 행정처분 사전 통지 (2013. 5. 30)
-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실태 재조사 (2013. 5. 31)
- 인쇄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관련 회의 (2013. 6. 3/환경부 중구청 서울인쇄조합)
- 환경부에 주거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 (2013. 7. 4)